

재형저축 등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신청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 내용

의견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의
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의견서는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또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